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피해아동 보호 강화 등〉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81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현장출동 등 사법경찰관 직무활동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	3
2. 현장출동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공유 의무화	9
3.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등의 동행요청권 부여	13
4. 아동학대범죄의 수사·심리에 전문가 의견조회 제도 도입	17
5. 임시조치의 청구 주체 확대 및 청구 시 첨부서류 추가	21
6. 이행실태 조사결과에 근거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26
7. 아동학대 통계 등 자료 요청 및 면담 요청 주체 확대	3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24.
3. 회 부 일 : 2024. 6.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 아동 수는 2018년 28명에서 2022년 50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음. 또한 아동학대 발생장소가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2만 2,738건, 81.3%)하고 있고, 주된 학대 행위자가 부모(2만 3,119건, 82.7%)인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사건 대응을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특히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초동조치 및 사후조치 실효성 부족, 의료인과 같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 미비, 부처간 업무 공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범죄 사건을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 사건 처리상 사법경찰관의 면책과 결과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법원이 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의료인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경찰청장이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요구

및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제11조의3 신설 및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15조, 제51조, 제53조, 제55조의2).

Ⅲ. 검토의견

1. 현장출동 등 사법경찰관 직무활동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제11조에 의한 현장출동이나 제12조에 의한 응급조치, 제13조에 의한 긴급임시조치¹⁾ 업무의 수행과 그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의5(사법경찰관 직무활동에 대한 면책) ① 사법경찰관이 제11조에 의한 현장출동이나 제12조에 의한 응급조치, 제13조에 의한 긴급임시조치 업무의 수행과 그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나. 현장출동 등 사법경찰관 직무활동에 대한 면책 필요성

- ☐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의 ①현장출동, ②응급조치 및 ③긴급임시조치 업무에 대한 징계 면책규정을 둠으로써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초기대응을 유도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 이와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수행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는 사법경찰관리의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하여는 특별히 민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징계·문책의 면책도 면제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적극적 직무수행을 위한 장치를 두고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면책)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참고로,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요구 또는 문책 요구 면책규정을 두고 있고, 개별법에서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감사원법」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35조(면책)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제28조의 임시기준 등 이 법에 따른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개정안의 면책 특례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적극적인 초동 대응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다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형사면책 또는 감경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여 그 요건을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이 법에 따른 현장출동,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등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면책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면책과 징계면책의 성립 요건, 관련 입법례와의 비교 및 책임 면제 대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긴급임시조치는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과잉조치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무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²⁾ 상 원칙적으로 고의·과실 여부는 징계책임 성립의 요건이 아니며,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중과실이 없는 때에 징계 책임을 면제하고 있어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여타 공무원 및 유사직무와 달리 ‘사법경찰관의 아동학대 대응 업무 수행 시’에만 경과실 면책 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현장조사, 분리보호, 아동학대 판단 등을 이유로 고소, 고발, 행정심판 청구, 인권위원회 제소 등을 당하고 있으며, 소송 대응 및 법적 책임의 부담이 상당하여 적극적인 조치가 어렵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직무 상 의무와 관련하여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면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사법경찰관의 면책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제78조(징계 사유) ⑤ 제1항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에도 동일 규정 (제69조제5항, 제75조의2제3항)

2. 현장출동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공유 의무화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조사결과보고서는 사법경찰관리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상호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현장출동) ① ~ ⑦ (생략) <u><신설></u> <u><신설></u>	제11조(현장출동)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제2항에 따라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u> <u>⑨ 제8항에 의하여 작성된 조사결과보고서는 그 내용을 사법경찰관리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상호 송부하여야 한다.</u>

나.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의무화 및 공유 대상 확대 필요성

□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현행법 제11조 제2항3)의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을 의무화하고,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사법경찰관리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상호 송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의심징후를 인지하고 아동학대 발생 사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제11조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 보고서를 사법경찰관리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상호 송부하여야 함.

현행법 제12조4)는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현장출동)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의 보호
2.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이하 “사례관리”라 한다)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②·④ (생략)

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확인되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 피해 사실의 요지 등을 기재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유하도록 하고 있고, 제11조제7항⁵⁾은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과 같이 모든 현장 출동에 대하여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의무 부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보다 촘촘하게 관리·대응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현장조사결과보고서를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에게도 송부하도록 하여 정보 공유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아동학대 사례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인력 상황이나 실무적으로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무부는 현행법상 아동학대 사건 조사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보호계획서를 작성하고, 사법경찰관리는 초동조치결과를

⑤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 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에는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현장출동)⑦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찰청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실무상 혼란이 우려되고, 현행법 제11조는 동행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결과를 상호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결과보고서의 상호송부 또한 개정실익이 적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 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등의 동행요청권 부여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제11조의2에 따른⁶⁾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조사 시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조사)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11조의2(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u>

나.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조사 시 동행요청권 부여 필요성

- 6) 제11조의2(조사)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조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로, “행정기관”은 “시·도 또는 시·군·구”로, “조사대상자”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으로 본다

- 개정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출동 외에도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 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인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법 제11조제1항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출동 시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제11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출동 시 “아동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11조의2에 따른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에는 별도의 동행 요청권을 두고 있지 아니함.

제11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복지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의 보호
2.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이하 “사례관리”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시 아동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

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의2(조사)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조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로, “행정기관”은 “시·도 또는 시·군·구”로, “조사대상자”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으로 본다

□ **현행법** 제11조의2에서 규정하는 조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한 출석·진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조사에 대하여 제11조의 2제3항은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1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⁷⁾, 제11조의2의 조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인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경우 불응 시 처벌규정은 없으나, 이 법 제63조제1항제3호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조사) ③ 제1항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조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로, “행정기관”은 “시·도 또는 시·군·구”로, “조사대상자”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으로 본다.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조사 대상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폭행 등 아동학대행위의 성질이나 정도,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사법경찰관리 등의 동행 요청이 필요한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일반적인 행정조사와는 다르게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무부**는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학대 대응을 위하여 지자체, 수사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각 역할을 부여하고 있고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는 초기 현장대응 및 사례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조사 시 타 기관에 대한 동행요청은 기관 간 업무영역을 불명확하게 하여 대응 체계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8) 지자체: 초기현장대응 및 사례관리, 수사기관: 범죄수사 및 아동보호절차 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 및 가족의 회복지원

4. 아동학대범죄의 수사·심리에 전문가 의견조회 제도 도입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조사·심리할 때 전문가 의견조회 제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1조의3(전문가의 의견 조회)</u> 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아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신체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아동학대범죄를 조사·심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만 한다. ③ 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관련 후보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수사기관이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나. 전문가 의견조회 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

-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 과정에 전문가 의견조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수사·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피해자가 아동인 사건의 경우 언어·기억·진술의 일관성 등과 관련하여 아동의 발달과정 또는 심리적 특성 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⁹⁾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개정안은 아동학대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외에도 “신체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아과 의사”를 전문가에 포함하고 있음.
- 현행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전문수사자문위원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에 따라 검사와 법원은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수사 또는 소송 절차에서 전문가 의견을 활용할 수 있음.¹⁰⁾

9) 홍유진·김시엽, 아동 대상 성범죄의 전문가 참여제도에 관한 고찰 - 아동 진술의 확보와 분석에서의 개입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5권4호, 2017.

10)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9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면보다는 법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시 전문성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를 명문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참고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전문가 의견조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조사·심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후보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준용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본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 ②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③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무부는 전문가 등의 진단 소견은 현행법상 ‘검증, 감정, 증언’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행법과 대법원 규칙·예규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바 현재도 아동학대 수사·재판 실무상 통상 전문가의 소견을 조회·참고하고 있으므로 개정실익이 적고, 개정안의 취지가 모든 아동학대 사건의 처분 및 판결시 전문가의 진단 소견 조회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면 사건의 경중과 관계없이 진단 소견 절차를 거치게 됨으로써 수사·재판의 부당한 장기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해당 조문을 보호사건의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4장에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5. 임시조치의 청구 주체 확대 및 청구 시 첨부서류 추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주체를 현행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외에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안 제14조제2항),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 개정안 제11조 제8항에서 현장출동 시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생략)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 <u>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u> 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 ----- ----- <u>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제15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할 수 있는 직군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신고의 무자에 포함됨.

- 반면에, 임시조치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사법처리 즉, 형사 처벌이나 보호처분을 하기 전에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 현행법 제19조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하여 판사가 결정으로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의 격리, 접근 금지 등 7가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¹⁾

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 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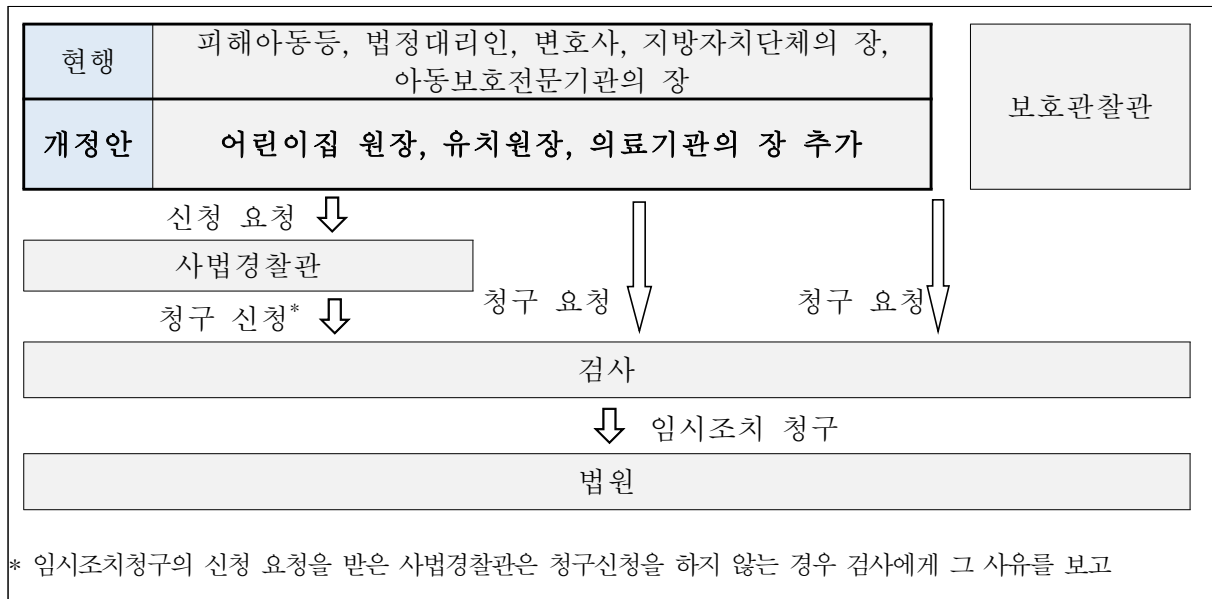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への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판사는 피해아동등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임시조치의 청구 절차 >



- 이러한 임시조치는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은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따라서 임시조치의 청구는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범죄 발생을 인지한 이후 형사절차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라는 점에서 어린이집 원장 등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더해 임시조치의 요청권자에까지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현행법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임시조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바, 이는 아동보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현장 출동 조사에 참여하는 등 피해아동 보호 및 사례관리에 관한 전문성 및 업무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무부는 임시조치는 아동학대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행위자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률적 조치인바 현행법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성격에 따라 요청권자¹²⁾를 피해아동 본인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할 공공책임을 부여받은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고,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의료기관의 장은 조치 요건을 판단할 정보 또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

□ 다음으로, 개정안 제11조제8항은 사법경찰관리등이 현장출동 시 의무적으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에 따라 검사가 임시조치청구 시 작성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이 지연되는 경우 임시조치 청구와 같은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장 인력 상황, 절차 지연 가능성 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2)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피해아동의 변호사, 지자체장(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6. 이행실태 조사결과에 근거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현행법은 판사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이행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변경하고(안 제51조제1항),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이행실태 조사 주기를 “수시”에서 “월 1회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① ----- ----- ----- ----- -- . ----- -----위하여 제53조에 따른 이행실태 조사결과에 의 하여 그-----또는----- ----- -----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현행	개정안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53조(이행실태의 조사) ① 관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u>수시로</u>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생략)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3조(이행실태의 조사) ① --- ----- ----- ----- ----- ----- -----월 1회 <u>이상</u> ----- ----- -----. ② (현행과 같음)

나. 이행실태 조사 주기 및 이행실태 조사에 기반한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 연장을 결정의 적절성 여부

- ☐ 개정안은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이행실태 조사 주기를 명시함으로써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행실태 조사에 기반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 법원의 판사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직권으로도 연장할 수 있던 것을 이행실태 조사결과 또는 신청에 의하여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직권 연장을 배제하는 것은 피해아동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과 같이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이행 실태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할 경우, 조사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법원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 등의 인력 현황이나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할 때¹³⁾ 개정안의 집행가능성 및 실효성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행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한 기간연장 필요성 결정에 대해서는 이행실태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행실태조사 결과에 의하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무부는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없이 혹은 실태조사 중에도 기간 연장을 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거쳐야만 기간 연장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오히려 피해아동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과 실태조사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실태조사 주기를 의무화하는 것은 그 실효성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심리절차 지연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3) 개별적·구체적인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이행실태 조사는 국가의 아동학대 보호능력, 나아가 범죄 대응능력의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음.

- 법원행정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이행실태조사를 ‘수시’에서 ‘월 1회 이상’으로 하는 것은 적극적인 조사를 강조하고,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이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7. 아동학대 통계 등 자료 요청 및 면담 요청 주체 확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법무부장관 외에 경찰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도 아동학대 관련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인에게 면담·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자료요청 및 면담) ① <u>법무부장관</u> 은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통계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의2(자료요청 및 면담) ① <u>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u> 은----- ----- ----- ----- ----- --.
② <u>법무부장관</u> 은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의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② <u>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u> 은----- ----- ----- ----- -----.

나. 아동학대 통계 등 자료 요청 및 면담 요청 주체 확대 필요성 여부

- 개정안은 아동학대 관련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인에게 면담·질문할 수 있는 주체를 법무부장관 외에 경찰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확대함으로써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참고로 현행법 제55조의2는 법무부장관이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통계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아동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되었음.(2020. 10. 1. 시행)

- 다만, 체계적·통일적인 정책 추진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요청 등의 권한을 일원화 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행정부처 간 협의체(사회관계장관회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회의 등)와 아동학대 관련 정보공유 시스템(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법무부가 수집한 정보를 타 행정기관과 공유할 수 있을 것임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무부**는 현행법상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중장기적인 아동학대 실태 파악 및 지속적 제도개선 필요에서 도입된 조문으로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까지 확대하는 것은 당초 취지와 맞지 않고,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 공무원 등의 과도한 업무 부담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59